

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2. 11. 29.>

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(제6조제1항 관련)

1. 다음 각 목의 교육시설 및 설비를 모두 갖추 것

가. 강의실: 면적[내벽 간 바닥면적을 실측(實測)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

나. 실습실: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

다. 실험실

1) 면적: 60제곱미터 이상이고, 필요시 불연재의 칸막이 사용이 가능할 것

2) 교육설비: 김 종자 배양 장비, 현미경, 염분 측정기, 멸균기(autoclave), 수소 이온농도측정기(pH meter), 마이크로피펫(micro pipette), 무균작업대(clean bench), 유전자증폭기(polymerase chain reaction machine), 전기영동 장치, 초저온 냉동고, 분광광도계(spectrophotometer), 건조기, 조단백질측정 장비, 이물측정 장비 등을 갖추 것

라. 급수시설: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「먹는물관리법」 제 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

마. 화장실: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,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일 것

바. 조명시설: 야간 강의 시 책상 면과 칠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

사. 소방시설: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화설비, 정보설비, 피난설비, 소화용수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 것

2.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을 개설·운영할 것

가. 김산업 창업 희망자 교육과정

나. 김산업 취업 희망자 교육과정

다. 김산업 종사자 보수교육과정

라. 김산업 경영 교육과정

마. 김산업 마케팅 교육과정

바. 김산업 관련 법규 교육과정

사. 김제품의 품질향상, 개발 및 위생 관련 교육과정

아. 김제품 생산·가공·제조·조리 관련 강사 양성 교육과정

자. 그 밖에 김제품의 세계화에 필요한 교육과정

3. 각 교육과정의 과목별 교육시간(실습시간을 포함한다)은 40시간 이상일 것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을 1명 이상 둘 것

가.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과목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「고등
교육법」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한 학기 이상 강의한
경력이 있는 사람

나.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다. 김산업 분야의 현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